

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방법

○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대상자

- 공통 :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 이상
- 학사 1~2년 : TOPIK 3급 이상 소지자
- 학사 3~4년, 석사, 박사 : TOPIK 4급 이상 소지자
- 영어트랙과정 : 학년 관계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 (NEW TEPS 327점) 이상 자격증 소지자

○ 시간제취업 허가 시간

과정	어학능력 기준 충족		어학능력 기준 미충족
	학기 중(월~금)	학기 중(주말), 방학	
학사	30시간	무제한	10시간
석/박사 재학생	35시간		15시간
석/박사 수료생 (논문준비생)	주당 30시간		15시간

○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서류

1. 여권
2. 외국인등록증(앞, 뒤)
3. 성적증명서
4. **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(붙임1)**
 - ※ 고용주, 성균관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수
 - ※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기간 및 시간과 동일해야함
5. **근로계약서(시급, 업무내용, 근무시간 포함)**
 - ※ 표준근로계약서(붙임2) 양식 활용 가능
 - ※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안에서만 가능
6. **사업자등록증**
 - ※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포함된 경우 '시간제취업요건준수확인서(붙임3)'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
7. (선택) 어학능력입증서류

○ **시간제취업 허가 절차**

1. 근로계약서,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(고용주 서명 필수)
2. 학교에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
 - 챌린지스퀘어 > 외국인유학생 민원(온라인)신청 > 시간제취업 확인
 - 관련 신청 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해야함
 - 학교 담당자가 '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'하단 유학생담당자란에 확인 서명 예정
3. 학교에서 허가받은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,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
4. 근무 시작

○ **D-2비자 유학생의 수익적 연구 및 인턴 활동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**

구분	소속대학 내 활동 (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 받는 경우)	소속대학 외 활동 (대학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수당 받는 경우)
학업(학점,논문) 관련	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없음	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학업(학점,논문) 무관	시간제취업 허가 필요	시간제취업 불가!!!!
학업관련여부 판단 심사	아래 ①,② 서류 제출 시 심사 ① 지도교수확인서 ② 단과대학장 추천서	아래 ①,②,③ 서류 제출 시 심사 ① 지도교수확인서 ② 단과대학장 추천서 ③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

※ 지도교수확인서, 단과대학장 추천서,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는 붙임4~6 양식 활용